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6-431호

2017학년도 울산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학년도 울산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교육감

1

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가. 공립학교 [15과목, 83명]

(단위 : 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일반	장애	소계		일반	장애	소계
국어	2		2	상업정보	6		6
일반사회	2		2	기계·금속	2		2
수학	2		2	화공·섬유	2		2
지구과학	2		2	보건	13		13
체육	13	1	14	사서	2		2
음악	7	1	8	영양	5		5
미술	5	1	6	특수(중등)	9	2	11
기술	6		6				
합계	15과목		총 83명(일반 78명, 장애 5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제2항에 의거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는 최종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과목별 일반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 비교교과(보건, 사서, 영양)교사는 초·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우리 교육청 임용계획에 의합니다.

나. 사립학교 [1개 법인, 2과목, 2명]

학교법인명	임용예정학교	과목	인원	학교 홈페이지
동신학원	울산제일고등학교	체육	1	http://www.ulsanjeil.hs.kr (울산제일고)
		음악	1	
		합계	2	

- ※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공개전형을 위탁한 학교법인의『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제1차 시험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당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르므로 해당 임용예정학교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응 시 자격 ([※ 사립학교 지원자는 해당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름](#))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선발분야	응 시 자격
중등학교 교사	<input type="radio"/>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7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특수학교 (중등)교사	<input type="radio"/>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2017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교사(이료)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보건교사	<input type="radio"/> 보건·양호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 【201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사서교사	<input type="radio"/>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 【201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영양교사	<input type="radio"/> 영양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 【201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장애인구분	<input type="radio"/>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7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input type="radio"/> 장애 구분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이어야 함 <input type="radio"/> 장애인은 장애 구분선발 과목이 없거나, 구분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 현역군인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나.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선발예정과목	응시가능 표시과목	선발예정과목	응시가능 표시과목
지구과학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기계 · 금속	기계 · 금속,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일반사회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화공 · 섬유	화공 · 섬유, 공업, 화공, 섬유
기술	기술, 기술 · 가정	상업정보	상업정보, 상업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다.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5)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7)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결격자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 시행일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별	시험과목	대상	날짜	시간	시험장소
제1차 시험	교육학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2016.12.03.(토)	▪ 1교시 09:00~10:00(60분)	▪ 시험장소 공고 : 2016.11.25.(금) 10:00 예정 ▪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시험공고)
	전공 A			▪ 2교시 10:40~12:10(90분)	
	전공 B			▪ 3교시 12:50~14:20(90분)	

전형별	시험과목	대상	날짜	시간	시험장소
제2차 시험	실기평가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실기평가 실시과목 응시자 (체육, 음악, 미술)	2017.01.11.(수)	▪ 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장소 공고 ▪ 2017.01.03.(화) 10:00 예정 ▪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시험공고)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제1차 시험 합격자 (비교수 교과 제외)	2017.01.17.(화)	▪ 09:00~10:00(60분)	
	수업실연			▪ 12:00~ 【평가시간:20분】	
	교직적성 심층면접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	2017.01.18.(수)	▪ 09:00~ 【평가시간:10분】	

- ※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 장소를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 ※ 상기 시험일정(날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2차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해당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릅니다.**

나.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시	장 소
제1차 시험 합격자	2017.01.03.(화) 10:00 예정	【공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시험공고)
최종합격자	2017.02.03.(금) 10:00 예정	

- ※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우리 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제1차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당 학교법인에서 공고합니다.**
(<http://www.ulsanjeil.hs.kr>)

4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사립학교 지원자는 해당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름**

가. 원서 접수기간 : 2016.11.07.(월) 09:00 ~ 11.11.(금) 18:00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마감일(11.11.)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 ~ 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6.11.12.(토) 13:00 ~ 11.14.(월) 18:00

※ 원서접수 기간 중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 취소기간은 원서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 수정은 불가하고,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에 취소 할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중복지원 금지

- 1)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각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되는 시험으로 타 시·도 공·사립 및 울산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중복지원 할 수 없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위탁된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중 단 한 곳만 지원 가능)
- 2) 단, 장애인 구분선발과목 응시대상자는 2곳의 임용시험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A시 공립학교 중등(특수) 1곳 지원 및 A시 사립학교 중등(특수) 1곳 지원
A시 공립학교 중등(특수) 1곳 지원 및 B도 공립학교 중등(특수) 1곳 지원
- 3) 중복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지원으로 일어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이며,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최초 원서접수만 인정됩니다.

필독!!! 인터넷 '온라인채용시스템' 을 통한 원서접수 시 주의사항

중복 접수된 원서는 원서취소기간 전 취소되오니 반드시 신중히 원서 접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라. 접수방법

1) 울산광역시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http://edurecruit.use.go.kr>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 인정범위 : 201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2011.01.01. 이후 실시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서, 제3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의 시험결과가 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합니다. (제33회 합격자 발표일 : 2016.11.08.)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 등급이 3급 미만인 자는 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입력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등급, 인증번호(예 17-1*****), 인증(합격)일자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p>< 3급 이상 취득자 ></p>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등급 : “1급” • 인증번호 : “<u>17-1*****</u>” • 인증(합격)일자 : “<u>20121113</u>”
--	---

- 유의사항
 - 추후 우리 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여부를 응시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호”로 해당 시험기관에 조회 요청하므로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확인 후 인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 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해당사항 입력 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다)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 윈도우 8), 익스플로러 버전 7.0 ~ 11.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3) 사진등록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증명사진**
 -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진규정 참조(<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30KB이상 100KB이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여권용 컬러증명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 유형
 - 본인식별이 곤란하거나, 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합격 시 인사기록카드 사진으로 활용)
 - 사진규격과 파일규격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 ※ 대리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경찰관 입회하에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비밀번호 분실주의

- 인터넷 원서접수 시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로그인 화면의 '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수수료 납부

- 납부금액 : 25,000원
- 납부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방식으로 납부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불가)
-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전자결제대행서비스 계약체결업체인 (주)케이지 이니시스의 명의로 청구됩니다.
- 원서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제2차 실기과목(체육, 음악, 미술)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10,000원을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에 동봉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립학교 지원자는 해당 학교법인 전형계획에 따릅니다.)
※ 우편 발송 시 우편 소액환(1만 원)으로 교환하여 합격자 증명서류에 동봉

6)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사항을 입력(원서접수 3단계 가산점 및 기타사항 입력란)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 파일 첨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수수료 면제신청서 1부- 면제대상 증명서 1부

* 주의사항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 반드시 결제 완료하여야 응시원서가 접수되며, 응시수수료는 추후 면제(환불)됩니다.

7)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2016.11.25.(금) 10:00부터 출력 가능(이면지 사용 불가)
-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닙니다.)
-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마.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 1)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2)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 사항 [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응시원서 입력내용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가(산)점]로 인한 합격자 결정시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부당 가(산)점으로 합격한 자의 합격은 취소합니다.

* 특히, 가(산)점 해당사항 입력 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4)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내용 조회 또는 확인 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시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파일 첨부로 제출(아래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참조)하여야 합니다.
- 6)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반드시 파일 첨부로 제출)

제출 대상자	스캔파일 첨부 제출서류
○ 체육과목 가산점 대상자 (체육과목 응시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입상 또는 지도 실적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p>※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 실적만 유효함</p>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에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한 후 스캔하여 제출 ○ 의사 진단서 : 시각장애 3급~6급, 뇌병변장애 4급~6급, 상지지체 1급~3급에 한함 ○ 의사 소견서 : 청각장애에 한함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편의지원 신청 시 【13.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참고 - 장애인의 경우 편의지원 신청서 등 증명서류 미제출시 수험편의를 제공할 수 없음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수수료 면제신청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에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한 후 스캔하여 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증명서류 1부 <p>※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이어야 함</p>

※ 파일 첨부 제출 방법 :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 - ‘제출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예시】 : 홍길동-경기입상증명서.jpg, 홍길동-장애인 편의지원신청서.jpg, 홍길동-의사진단서.jpg】

각종 증명서류 제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사립학교 학생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전형계획에 따름

가. 각종 증명서류 제출대상 및 기간

대상자	제출일	제출처	제출방법
제1차 시험 합격자	2017.01.04.(수) ~ 01.05.(목) [2일간], 10:00 ~ 18:00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본관 4층) (052)210-56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대리인 제출 가능 -[붙임2]의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에 기입 및 편철하여 제출

* 주소 : [우편번호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중등임용시험 담당자 앞

- 증명서류 제출대상자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여야 합니다. [단,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 의사진단 (소견)서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나. 제출서류

1) 공통사항(제1차 시험 합격자 전원 제출)

대상 및 규격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201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택1)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부전공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예정확인서 1부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교원 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및 부전공자격소지자 포함

대상 및 규격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법정해당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2)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제출

대상 및 규격	제출서류
<p>○ 병역의무 이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필로 표기한 자(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적용 시 활용) <p>※ 단, 병역 복무중인 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2016.11.11.)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기재) 1부 제출</p>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전역 예정일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1부
<p>○ 미술과목 지원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응시할 필수 및 선택항목을 표기한 신청서 원본 	미술 실기평가 선택 종목 신청서 1부
<p>○ 실기과목 응시수수료 : 10,0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기과목(체육, 음악, 미술) 응시자에 한함 	현금 또는 우편 소액환
<p>○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 마감일(2016.11.11.)현재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의사진단(소견)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류 일체 ※ 원서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원본서류 각 1부

시험과목 및 유형별 출제범위 및 배점

가. 제1차 시험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 점 ※모든교과동일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고시 제2015-73호(2015.10.1.)의 [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p>※ 특수(중등) 과목, 비교수 교과도 동일하게 적용</p>
전 공 A	2교시 (90분)	기입형	8문항	16점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고시 제2015-73호(2015.10.1.)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 10항에 근거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27호](2012.11.21.)의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육학(25~3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 교과내용학(75~6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서술형	6문항	24점			
	3교시 (90분)	서술형	5문항	20점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특수(중등) 과목도 동일하게 적용 ※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서술형	2문항	10점			
		논술형	1문항	10점			
소계			22문항	80점			
계(배점)				100점			

※ 제1차 시험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이 경우 검정은 제1차 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합니다.

(201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제3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의 시험결과가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나. 제2차 시험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교과	비교수 교과										
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일정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40	100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5	10	.	비교수 교과 제외									
수업실연	○ 수업실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5	20	.	비교수 교과 제외									
실기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음악</td> <td colspan="2" style="padding: 5px;">정음, 가창, 전통음악</td> </tr> <tr>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미술</td>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공통(1)</td>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인체소묘</td> </tr> <tr>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체육</td>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선택(1) 한국화(수묵담채화), 서양화(수채화), 디자인, 조소 ■ 육상 : 장애물(허들)달리기 ■ 체조 : 기계체조(마루운동) ■ 배구 : 서비스, 리시브, 세트업, 스파이크 ■ 배드민턴 : 스토로크, 연결동작 ■ 수영 : 접영-배영-평영-자유형</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p>	음악	정음, 가창, 전통음악		미술	공통(1)	인체소묘	체육	선택(1) 한국화(수묵담채화), 서양화(수채화), 디자인, 조소 ■ 육상 : 장애물(허들)달리기 ■ 체조 : 기계체조(마루운동) ■ 배구 : 서비스, 리시브, 세트업, 스파이크 ■ 배드민턴 : 스토로크, 연결동작 ■ 수영 : 접영-배영-평영-자유형			30	.	해당 교과
음악	정음, 가창, 전통음악													
미술	공통(1)	인체소묘												
체육	선택(1) 한국화(수묵담채화), 서양화(수채화), 디자인, 조소 ■ 육상 : 장애물(허들)달리기 ■ 체조 : 기계체조(마루운동) ■ 배구 : 서비스, 리시브, 세트업, 스파이크 ■ 배드민턴 : 스토로크, 연결동작 ■ 수영 : 접영-배영-평영-자유형													
계(배점)		100	100	100										

※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 기본 원칙: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2015.12.1.)까지
- 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까지

■ 특수학교교사 특수교육 교육과정

-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2015.12.1.)까지
- 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2015.12.1.)까지

※ 교과 구분

- 1) 일반 교과: 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 2) 비교수 교과: 보건, 사서, 영양
- 3) 실기평가 교과: 예체능 교과(체육, 음악, 미술)

※ 참고 사이트

- 1) 출제 범위 및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 2)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www.textbook114.com)

※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2차 시험은 해당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름

7

가산점 (※ 사립학교 지원자는 해당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름)

가산점 부여대상	구 분	실 적	성적	가산점	비고
체육대회 입상 및 지도실적	본인 입상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5점	
			금	4점	
			은	3점	* 체육과목에 한함
		전국체육대회(정식종목) 입상자	동	2점	* 정식종목에 한함 * 중복시 택일
	지도 실적	시·도 교육청 및 체육회 지도자로 임용 된 후 1년 이상 팀(선수)을 지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정식종목에서 입상시킨 실적	금	4점	
			은	3점	
			동	2점	

- ※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하며, 위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만점의 10%(10점)이내로 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는 별도임)
- ※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11.11.) 기준입니다.

8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사립학교 지원자는 해당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름)

가.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나. 가점 부여 : 제1차, 제2차 시험별로 적용 (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다. 선발상한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라. 소수선발과목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도 가점(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 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2016.11.11.)현재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9

합격자의 결정 (※ 사립학교 응시자는 해당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름)

가. 공립학교

구 분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합니다.○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합니다.
최종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시험의 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 제2차 시험의 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합니다. <p>※ 제1차 시험의 성적은 가산점을 제외한 교육학, 전공 시험성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합니다.

구 분	합격자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제2차 시험의 성적(가점제외)이 높은 사람 - 3순위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 4순위 :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 교직적성 심충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전형별(단계별), 과목별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모든 시험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나. 사립학교

구분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 고득점 순으로 합니다. ○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니다.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합니다. <p>※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전형별(단계별), 과목별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p>
최종합격자	해당 학교법인 자체 전형 계획에 따릅니다.

10

최종합격의 취소

(※ 사립학교 응시자는 해당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름)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 나.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 라. 가점/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 마.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17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사.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 아.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가능)

11

시험시행 일반원칙 (※ 사립학교 응시자는 해당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름)

-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우리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다.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라.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 마.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바.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

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 사.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아. 시험 전형별(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자. 본 시험에서 최종합격하고 신규 임용된 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3년(휴직, 직위 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이내에 타 시·도 기관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 차.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카.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2

응시자 유의사항 (※ 사립학교 응시자는 해당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름)

- 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 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라. 검은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은 불허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마)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 ※ **소지(반입)금지물품** : 휴대전화(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 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자. 위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 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립】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use.go.kr>
- 【사립】 동신학원(울산제일고등학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ulsanjeil.hs.kr>
- 임용시험 문의처 : 【공립】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 (052) 210-5632
【사립】 울산제일고등학교 행정실 ☎ (052) 277-3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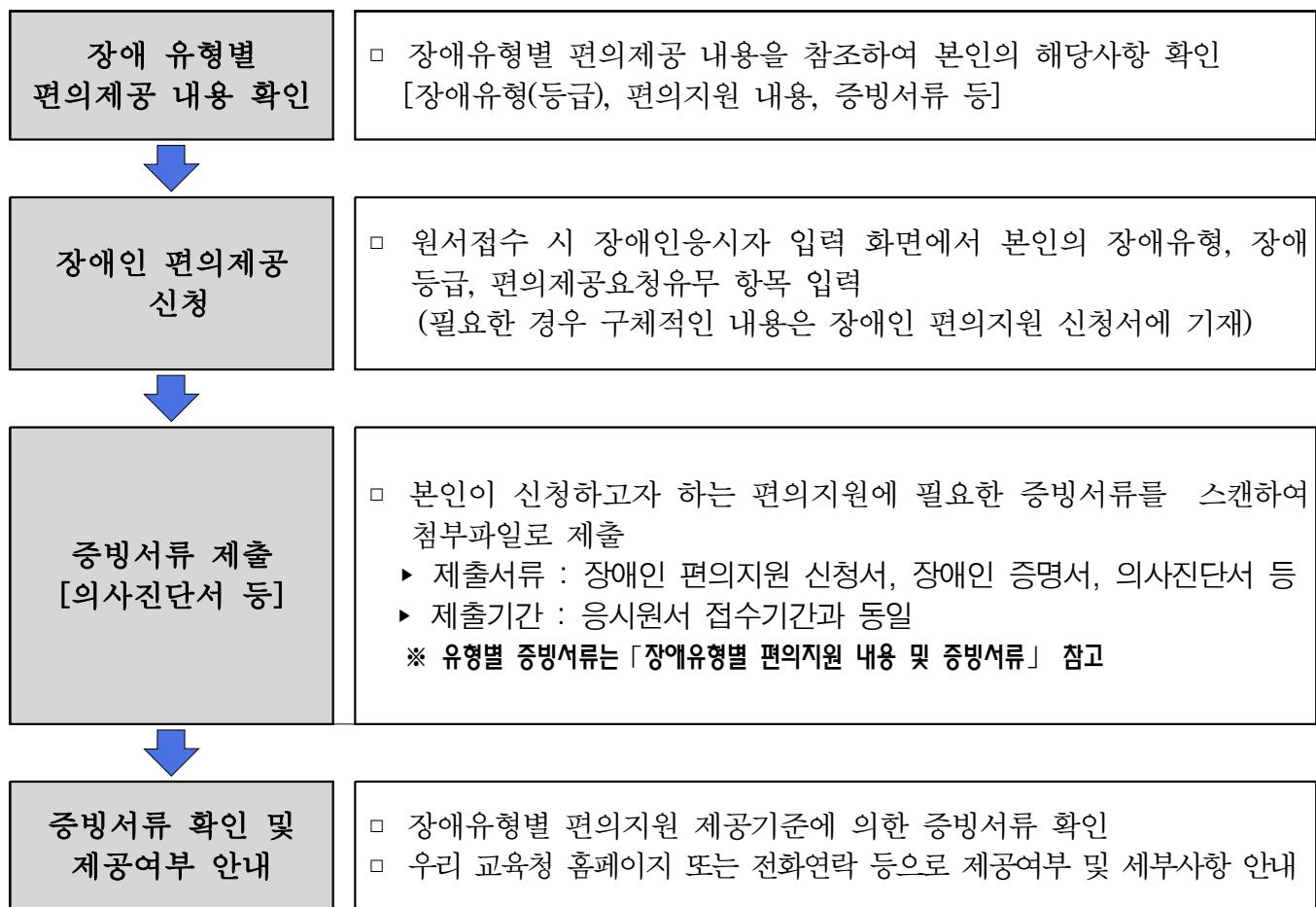
13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사립학교 응시자는 해당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따름)

가.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17학년도 울산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영양·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나. 편의지원 신청 절차



다.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2차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포함)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편의 제공
	편의제공	증빙서류	
지체장애인	중증상지지체 (1급~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시간 연장(1.2배)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p>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p> <p>증의지원신청서</p>
	경증상지지체 (4급~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p>장애인증명서</p> <p>증의지원신청서</p>
	하지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p>장애인증명서</p> <p>증의지원신청서</p>

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2차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포함)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편의 제공	
	편의제공	증빙서류		
뇌병변장애	1급~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연장(1.2배) · 확대문제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답안작성용 컴퓨터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1.5배 연장 ·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4급~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문제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답안작성용 컴퓨터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연장(1.2배)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	▶ 1급~2급 ▶ 3급2호, 4급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연장(1.5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 단말기 사용자) · 확대문제지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답안작성용 컴퓨터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단, 3급 2호, 4급 2호는 의사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점자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3급~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연장(1.2배) · 확대문제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답안작성용 컴퓨터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청각장애	2급~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1.5배 연장 ·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확대문제지는 B4 규격의 13point, 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서(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1**을 반드시 참고

라. 편의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1) 상기 ‘다’의 ‘장애인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다’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 2)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 음성지원 PC 등의 편의지원 제공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장애인응시자 입력 화면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② 장애 등급 ③ 편의제공요청 유무를 입력한 후 ④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붙임3] 및 증명 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악보관련 문항 등 음성지원 PC 지원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 제공합니다.
 - 음성지원은 센스리더 Basic/Pro (ver5.x.x.x.) 환경으로 제공합니다.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합니다.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 가능하며, 최종 결정된 편의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 3) 의사진단(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해당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참고1]의 발급일 및 발급내용 확인)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 · 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마. 시험시간 연장

제1차 시험 및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시험단계	시험과목	시험시간		
		일반 응시자	1.2배 연장자	1.5배 연장자
제1차 시험	교 육 학	09:00~10:00 (60분)	09:00~10:12 (72분)	09:00~10:30 (90분)
	전 공 A	10:40~12:10 (90분)	10:52~12:40 (108분)	11:10~13:25 (135분)
	전 공 B	12:50~14:20 (90분)	13:20~15:08 (108분)	14:05~16:20 (135분)
제2차 시험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09:00~10:00 (60분)	09:00~10:12 (72분)	09:00~10:30 (90분)

제2차 시험

시험단계	시험과목	대상	시험시간	
			일반 응시자	연장응시자(1.5배)
제2차 시험	수업실연	□ 뇌병변장애(1급~3급) □ 청각장애(2급~6급)	평가20분	평가30분
	교직적 성 심충면접		평가10분	평가15분

※ 제2차 시험(수업실연, 교직적 성심충면접)의 시험시간 연장은 평가시간만 연장함

참고 1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발급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14년 11월 11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1])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2])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3])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각장애	3급2호 4급2호	<p>상기인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②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③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6급	<p>상기인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②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③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장애	4급~6급	<p>상기인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②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③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가. 응시원서 최종 접수 결과 공개

- 1) 공개장소 :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행정정보→시험공고)
- 2) 공개일시 : 2016.11.16.(수) 10:00 예정

나. 시험 정보 공개

- 1) 공개범위 : 제1차 시험 문제
- 2) 공개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 3) 공개기간 : 제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다. 시험 정보 비공개

- 1) 제1차 시험 :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 2) 제2차 시험 : 문제지,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라. 합격선 및 개인별 성적 공개

- 1) 합격선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개
- 2) 개인별 성적

▶ 공개기간

- 제1차 시험 성적 : 2017.01.03.(화) ~ 01.31.(화)
- 제2차 시험 성적 : 2017.02.03.(금) ~ 02.08.(수)

※ 사립학교 응시자는 제1차 시험 성적만 공개

▶ 공개범위 : 응시자 본인의 시험전형(단계)별 성적

▶ 공개장소 :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use.go.kr>)

※ 비공개 : 개인별 석차 및 합격인원 2명 이하 과목의 합격선

마. 개인별 답안지 열람

- 1) 열람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 교육청이 정하는 일정기간
- 2) 열람범위 : 응시자 본인의 답안지 열람만 가능(필사 및 복사 불가)
- 3) 열람절차 및 방법 :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붙임 1. 201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1부

2.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 1부

3.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1부

4. 미술 실기평가 선택종목 신청서(미술과목 응시자만 해당) 1부

【붙임1】

201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사회취약계층 응시자만 해당)

- 응시과목 :
- 성명 :
- 생년월일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사항란에 (○) 기재)

면제대상	응시자 해당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응시수수료 납부내역 (본인의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하고 내용 작성)

납부방법	비고
신용카드결제 ()	통장계좌이체 ()
<input type="checkbox"/> 카드소유주명 :	<input type="checkbox"/> 계좌예금주 :
<input type="checkbox"/> 카드사명 :	<input type="checkbox"/> 이체은행명 :
<input type="checkbox"/> 카드결제일자 :	<input type="checkbox"/> 이체일자 :

* 카드사명 작성 예시 : 롯데, 외환, 현대, 국민, BC, NH, 하나SK, 삼성 등

* 이체은행명 작성 예시 : 농협, 우리, 광주, 제일, 국민, 하나, 외환, 우체국 등

본인은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제4항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대상 증명 서류 1부.

2016. 11. .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2】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

□ 인적사항

응시과목명		수험번호		성명	(인 또는 서명)
-------	--	------	--	----	-----------

□ 제출서류

제출 대상	제출 여부 (제출시○표)		제출 서류
1. 공통			<input type="radio"/> 교원자격증 사본 ※ 단,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직과정 이수예정확인서
2. 병역의무 이행자			<input type="radio"/>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도 가능함
3.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			<input type="radio"/>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input type="radio"/> 의사 진단(소견)서 - 해당자
4. 실기과목 응시대상자 (체육, 음악, 미술)	현금		<input type="radio"/> 실기과목 응시수수료 : 10,000원 ※ 우편 발송 시 우편 소액환으로 교환
	우편환		
5. 미술과목 응시 대상자			<input type="radio"/> 미술 실기평가 선택종목 신청서 ※ 신청서 제출 후 실기평가 선택종목 변경 불가함

【붙임3】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응시과목		전화번호	(휴대전화)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편의제공 신청 사항(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	등급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 표시)									
		시간연장(택1)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택1)				기타			
		1.2배	1.5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점지정보단말기 사용자)	점자문제지 음성지원PC 답안작성PC	확대문제지 답안작성PC 글자 13P	축소문제지 답안작성PC (확대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수화 통역사 배치	서면 안내자료 제공
상지지체장애			X								
하지지체장애			X								
뇌병변장애				X							
시각장애				X							
청각장애			X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및 특이사항	※ 기재(예: 확대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X표는 지원불가)

※ 시각장애인은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 시각장애인은 음성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축소 문제지와 같은 형태의 문제지가 필요한 경우 출제본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함

본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지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2. 의사진단(소견)서(편의제공 신청 시, 의사진단(소견)서 제출 해당자) 1부

2016. . .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불임4】 미술과목 제1차 시험 합격자만 해당

미술 실기평가 선택종목 신청서

■ 응시과목 :

■ 수험번호 :

■ 생년월일 :

■ 성명 :

■ 선택종목

▷ 미술과목 응시자

구분	한국화 (수묵담채화)	서양화 (수채화)	디자인	조소	비고
선택종목에 ○표시					※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 중 택1

상기와 같이 201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미술 실기평가 선택종목을
신청합니다.

※ 실기평가 선택종목은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2017. 1. .

위 응시자 성명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